

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0. 18 (화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10. 25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10. 25(화) 제12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10. 25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신영선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
1개 부서와 여유기구를 신설하고,
- 일부 부서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
정비·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
-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부서 명칭 변경(안 제3조, 제9조)
 - 임업경영과 ⇒ 산림과 - 농업경영과 ⇒ 농정과 - 축산경영과 ⇒ 축산과
- 『재난안전관리과』를 신설하고, “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”를 신설함.
(안 제3조)
-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시설관리담당으로 환경복지과에 흡수
(안 제3조)
- 여유기구인 『스포츠사업단』을 신설하고, “동계올림픽 추진과 스포츠
사업 관련사무”를 통합·1개단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육성·발전
시키는 전담기구를 설치함(안 제3조의 2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가.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(행정기구)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(여유기구의 설치운영) 및 같은 규정 제10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의 일부개정에 의하여
-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이 사무를 주관하는 "재난안전 관리과"를 신설하였고
 - "2014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추진"과 "일반적인 스포츠사업 관련 사무"를 통합하여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
 - 부서 명칭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, 농업 경영과를 농정과로, 축산경영과를 축산과로 변경하였고
 -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"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"를 폐지하고 "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장"을 "위생시설관리담당"으로 하여 환경 복지과에 흡수시키는 것으로 조직을 정비한 것임.
- 나.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